

「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일자 2026. . .
제출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15조제1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명칭이 변경 (2026. 1. 1.)됨에 따라, 인용 조례를 현행화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.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제15조제1항의 인용조례명 수정

- 당 초: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- 변 경: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

「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구미에코랜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제15호제1항 “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”를 “ 「구미시 사무위
탁 조례」 ”로 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구미에코랜드”란 산동읍 인덕리 <u>산5-1번지</u> 일원에 조성한 구미시산림문화관(이하 “산림문화관”이라 한다), <u>모노레일, 짚코스터, 산동참생태숲, 자생식물단지, 산림복합체험단지, 어린이테마교과숲, 문수산림욕장</u> 등의 산림문화휴양시설과 산림문화공원구역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산 5-1번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모노레일, 짚코스터, 어드벤처 트리타워, 산동참생태숲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3조(정의)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4조(개관 및 휴관일)</p> <p>① 구미에코랜드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연중 개</p>	<p>제4조(개관 및 휴관일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.</p>	<p>제4조(개관 및 휴관일) (개정안과 같음)</p>

관한다.

1. (생략)

2. 매주 월요일. 다만, 월요일이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

3.·4. (생략)

② (생략)

제5조(시설의 이용시간) 구미에코랜드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, 시설별 이용시간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.

제9조(시설의 예약) ① 모노레일, 짚코스터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(이하 모노레일 등)을 이용하려는 사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.

----- 그다음
음-----
--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시설의 이용시간) -----
이용 시간은 -----
----- 이용
시간을 -----
-----.

제9조(시설의 예약) ① 모노레일, 짚코스터, 어드벤처 트리타워 -----
--- “모노레일 등”
이라 한다-----

1. (현행과 같음)

2. (개정안과 같음)

3.·4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시설의 이용시간) (개정안과 같음)

제9조(시설의 예약) ① (개정안과 같음)

람은 이용하려는 달
의 전달부터 예약할
수 있다.

② 모노레일 등을 예
약한 사람은 예약일
로부터 24시간내에
제7조제2항에 따른
방법으로 시설이용료
전액을 납부하여야
한다.

③ (생략)

④ 제3항의 우선 예
약은 예약개시 당일
오전 8시 30분부터 9
시까지 구미시민을
우선하여 접수하고,
9시 이후부터는 다른
지역 주민과 구분 없
이 접수하는 방식으
로 한다.

⑤ 모노레일 등 이용
권의 티켓 현장판매
는 구미시에서 전담
하되 인터넷(모바일
포함) 예매를 위탁하
여 판매할 수 있다.

-----.

② -----

24시간 내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예약 개시 -----

-----.

⑤ -----
----- 현장 판매-----

-----.

② (개정안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⑤ (개정안과 같음)

⑥ (생략)

제10조(시설사용료 등의 반환) 시장은 모노레일 등 시설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사항을 취소하는 등의 반환 사유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반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 등을 반환할 수 있다.

제11조(시설이용 제한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
2. 시설물을 개·보수하는 경우
3. (생략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시설사용료 등의 반환) -----

---- 예약 사항----

-----.

제11조(시설이용 제한) -----

-----.

1. -----
----- 각종회의-----
----- 이용제한-----
2. ----- 개보수-----

3. (현행과 같음)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시설사용료 등의 반환) (개정안과 같음)

제11조(시설이용 제한) (개정안과 같음)

1. (개정안과 같음)
2. (개정안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손해배상 등)

① 이용자가 구미에 코랜드의 시설물 및 수목 등을 파손, 훼손 및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로 하여금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제13조(세입조치) 모노레일 등 시설운영 수입은 구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.

제14조(수입금 입금) 시설이용료 등으로 징수한 전일 수입금은 익일(금융기관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)에 구미시 수입금 출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
제15조(위탁운영) ①

제12조(손해배상 등)

① -----

----- 원인 제공자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세입조치) ----
---- 시설 운영 ----

-----.

제14조(수입금 입금) -

-- 그다음 -----

--- 출납 계좌-----
-----.

제15조(위탁운영) ① -

제12조(손해배상 등)

(개정안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세입조치) (개정안과 같음)

제14조(수입금 입금) (개정안과 같음)

제15조(위탁운영) ① -

시장은 구미에코랜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「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시설물 관리·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관리·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.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
제16조(사업지원 등)

① 시장은 구미에코랜드 등 산림문화·휴양시설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과 홍

----- 경우에는 「구미시-----

② -----

----- 위탁 기간-----
----- . -----
----- 갱신 기간-----
----- .

제16조(사업지원 등)

① -----
----- 산림문화휴양시설-----
----- 이해-----
----- 증진-----

----- 경우에는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-----

② (개정안과 같음)

제16조(사업지원 등)

(개정안과 같음)

보를 위하여 다음 각
호의 사업을 지원할
수 있다.

1.·2. (생 략)

3. 그 밖에 산림문화
휴양시설의 이용증
진 및 홍보를 위하
여 시장이 인정하는
사업

② (생 략)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
음)

3. -----
----- 이용 증진 -

② (현행과 같음)

1.·2. (현행과 같
음)

3. (개정안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